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5. 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병배 의원 외 6인
2. 건        명 :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
3. 안전요지 : 따로붙임
4. 검토의견 : 따로붙임

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   연    정    수

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5월 7일 전병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행복을 증진시키고,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첨단의료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.
- 나. 첨단의료산업육성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.
- 다.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라.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 운용(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).
- 마.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).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표적인 미래 유망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을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
####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,
-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,
-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 내지 제12조는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지역 및 유치 대상 등을,
- 안 제13조 내지 제18조는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·운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19조 내지 제25조는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.

##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조례안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의료 산업이 미래 핵심성장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35년간 과학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, 융·복합 산업이면서 유망산업인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
- 국책사업의 하나인 “첨단의료복합단지”가 대전에 유치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.
- 현재, 우리 지역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충청북도, 대구광역시, 강원도에서는 이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조례제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도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첨단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기금의 조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,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